## 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려［ $\left.\begin{array}{c}2003.12 .15 \\ \text { 조례 제 } 25 \text { 호 }\end{array}\right]$

개정 2007．11． 23 조례 제264호 일부개정 2013．11． 8 조례 제504호 전부개정 2019．7． 26 조례 제875호

제1조（목적）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 14 조 및 제 18 조의 6 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．

제2조（의료업무 등의 수당）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（이하＂영＂이라 한다） 제 14 조에 따른 별표 9 제 2 호가목의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은 별표 1 과 같다．

제3조（장려수당）영 제 14 조에 따른 별표 9 제 8 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업무를 전담하 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은 별표 2 와 같다．

제4조（직급보조비 추가 지급액）영 제 18 조의 6 에 따른 별표 14 비고 제 3 호에 따라 중 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（소재지가 증평 군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）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직급 보조비는 별표 3 과 같다．

부칙（2019．7． 26 조례 제875호 전부개정）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．
［별표 1］

##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

| 구 분 | 전 문 의 | 일 반 의 |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월 지급액 | 995，000원 | 914,000 원 | 250，000원 |

$\square$ 비 고
1．전문의는 「의료법」 제 77 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 을 말하며，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「의료법」 제 5 조에 따른 의사•치과의 사－한의사를 말한다．

2．보건진료직렬 공무원（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）은 「농어 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 19 조의 의료행위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．
[별표 2]

##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

| 지 급 대 상 | 월 지급액 |
| :---: | :---: | :---: |
| 분뇨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 <br> 하는 사람 | 150,000 원 |
| 하수 및 폐수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 | 120,000 원 |
| 하는 사람 |  |

※ 장려수당 지급대상 근무시설은 위생처리장, 하수처리장, 쓰레기처리장, 화장 장, 화장장관리사무소 등을 말함

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
[별표 3]

##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구분표

| 지 급 대 상 | 월 지급액 |
| :---: | :---: |
|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<br>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<br> (소재지가 증평군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) |  |

